

의안번호	2209602
의 퇴 인	소병훈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2.
추계번호	25C2108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3,750만원(연평균 8,75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노숙인 실태조사 주기 단축 (안 제9조)	-	-	-	437.5	-	437.5	87.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노숙인 등의 현황·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이 경우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조(실태조사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6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, 그 내용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 실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보건복지부의 기존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 단가를 참고하되, 추가되는 여성노숙인 시설 관련 내용은 기존 단가 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 - 동 법에 따라 가장 최근 수행한 노숙인 실태조사(「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」) 용역 단가(4억 3,750만원)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3년 주기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3,750만원(연평균 8,75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존 재정소요(A)	437.5	-	-	-	-	437.5	87.5
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(B)	437.5	-	-	437.5	-	875	175
추가재정소요(B - A)	-	-	-	437.5	-	437.5	87.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